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·관리되어야 하나,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했음. 이를 개선하기 위해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이 개정(‘26.5.28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(안 별표5)

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별도 없음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러.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 제9의5	150	200	250	300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5 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버.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 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	법 제78조 제4항 제9의6	150	200	250	300
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44